의 안 번 호	5057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 연월일	2026. 9. 18.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57

제출연월일 : 2026. 9. 18.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안이유

2026. 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에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되어 중복되는 업종 나열 문구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삭제함(안 제2조)

나. 인용 조문 간소화 및 중복 규정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

2) 입법예고: 2026. 7. 14. ~ 2026. 8. 4.(21일)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8. 7. ~ 2026. 8. 20.(13일)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없음, 법무혁신담당관-8559(2026.8.20.)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감사위원회-6817(2026.8.20.)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여성가족과-18133(2026.8.11.)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5)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 해당 없음

6)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법무혁신담당관-9420(2026.9.9.)

7) 관계 중앙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을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후원 하는”을 “후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하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목 및 나목 중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각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를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3.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2. ---------- ---------- 따른 지방공기업---------- ---------- ---------- ---------- ---------- ---------- 후원하는 ----------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하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 ---------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첨부서류)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제2조제1호----------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가. 관련 법령----------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나. 가목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제2조제2호에 따른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후원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조(준용) ---------- 않은 ----------.

[붙임 2]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⑬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 17. (생 략)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김 수 영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보건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김 수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조 영 숙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보건주사 김소연(044-300-5742)